의안번호	제 28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9년 10월 8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2

제출연월일: 2019. 10. 8.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표창 수여 대상을 “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식물 및 구조물 등”으로 확대하고,

나. 표창의 종류 및 명칭을 단순화하여 표창의 품격 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다. 교육지원청별 규모에 맞는 교육장 소속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표창 업무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표창 수여 대상 확대(안 제2조)

- 개인 또는 기관·단체 → 개인 또는 기관·단체, 동·식물 및 구조물 등

나. 표창의 종류 및 명칭 단순화(안 제3조)

-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 → 표창장, 상장, 감사장

다. 교육장 소속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1조제3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 ~ 9명으로 구성 → 5 ~ 13명으로 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9. 8. 30.(금) ~ 2019. 9. 19.(목)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 요인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단체
2. 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식물 및 구조물 등

제3조 중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 을 “표창장, 상장, 감사장”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적상” 을 “표창장”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적상” 을 “표창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 · 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를 “헌신적인 봉사로 교육 · 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우등상” 을 “상장”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우등상” 을 “상장” 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충북교육 시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대내외적으로 충북교육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단서 중 “우등상”을 “상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관 및 각 과장”을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인사담당사무관”을 “인사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명”을 “13명”으로, “행정과 총무팀장”을 “행정과(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단체 2. 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식물 및 구조물 등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표창장, 상장, 감사장----------.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생략) 3. <신설> 4. <신설>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삭제>
제6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 2. (생략)	제6조(상장) 상장----------.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경우 2. 학생 선도와 학생 복지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대외적으로 충북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충북교육 시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대내외적으로 충북교육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8조(표창권자) (생략)	제8조(표창권자) (현행과 같음)
제9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생략)	제9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순위 또는 등급 등이 미리 정해진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의) ---------- ---------- ---------- ----------상장 ---------- ----------.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행정과 총무팀장이 된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 ---------- ---------- ---------- ---------- 인사팀장-----. ③ ----------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 ---------- ---------- ---------- ---------- ---------- ---------- --행정과(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 총무팀장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17조 (생략)	제12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임규정) ----------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